

의안번호	2218324
의 퇴 인	김선민의원
회 답 일	2026.6.11.
추계번호	26C2143
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의2 (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 등)	○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지역 주민의 위생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목욕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(제1항) ○ 제1항에 따른 공공목욕탕의 설치 기준, 이용 대상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(제2항) ○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(제3항) ○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(제4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의2 (공공목욕탕의 설 치 및 운영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 등(안 제16조의2)

-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욕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지원의 대상, 범위 및 수준 등에 관한 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, 현시점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움
 -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, 지원 기준 및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비용에 대한 합리적 가정이 어려움
 -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조례 등을 근거로 공공목욕탕을 설치·운영하고 있어, 개정안에 따른 국가 지원체계와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관계 및 추가 지원 규모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움
 - 공공목욕탕의 설치 기준, 이용 대상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규모와 운영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nabo.go.kr